

부 산 지 방 법 원  
행정부  
[2018구단1064]

사 건 명 :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

원 고 : 원고1

부산 부산진구 이하 생략

소송대리인 변호사1

담당변호사 변호사1

피 고 : 수협중앙회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 B

담당변호사 변호사2

변론 종결 : 2019. 3. 6.

판결 선고 : 2019. 4. 14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

청구취지

피고가 2017. 6. 2.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

# 이 유

## 1. 처분의 경위

가. 원고는 2012. 5. 21. ○○○ 소유의 어선 ○○호에 승선하여 2012. 10. 16. 하선시까지 선원으로 근무하였다. 원고는 2012. 9. 18. 15:00경 위 선박의 출어준비작업을 하다가 ○○ 수협 냉동창고에서 얼음을 인계받아 이 사건 선박의 어창내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던 중 허리가 뜨끔하여(이하 '이 사건 사고'라고 한다), 같은 달 20일 한의원에서 치료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자, 같은 달 28일 ○○병원에서 요추부염좌, 제1-2요추간 좌측 추간판탈출증, 제4-5요추간 추간판탈출증, 양측 슬관절 염좌, 우측 견갑부 염좌의 진단을 받고 2012. 10. 25.까지 입원 치료를 하였다.

나. 원고는 2012. 10.경 어선소유자가 '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'에 따라 가입한 어선원 보험의 보험사업자인 피고에게 위 진단에 따라 요추부염좌, 제1-2요추간 좌측 추간판탈출증, 제4-5요추간 추간판탈출증, 양측 슬관절 염좌, 우측 견갑부 염좌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.. 피고는 2012. 11. 28.과 2013. 7. 26. '제1-2요추간 좌측 추간판탈출증'을 제외한 상병(이하 '재해인정상병'이라고 한다)을 '어선원등의 재해'로 승인하였고, '제1-2요추간 좌측 추간판탈출증'은 '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'으로 판단하여 각각에 상응하는 요양결정을 하였다.(이하 '1차 처분'이라고 한다).

다. 원고는 ○○대학교 ○○병원에서 제1-2요추간 추간판탈출증, 척추후관절 통증증후군(이하 '이 사건 병증'이라고 한다)의 진단을 받아 2017. 2. 3. 피고에게 추가상병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, 피고는 2017. 6. 2.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.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. 9. 1.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는데, 피고의 ○○심사위원회 위원들은 「제1-2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이미 직무 외 질병으로 판단된 상병이므로 추가상병의 대상이 아니고, 척추후관절 통증증후군은 자연적 경과에 의한 퇴행성 변화가 발병원인이고, 정확한 진단명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, 기존 장애 보상을 받은 '요추 제4-5번간 추간판탈출증'과 관련

된 증상으로 보인다」는 이유로 2017. 10. 31.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.

라.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. 1. 4. ○○○○○○보험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결을 청구하였으나, 2018. 3. 8. 위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, 위 재결서는 2018. 3. 15. 원고에게 송달되었다.

【인정근거】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, 을 제1 내지 3, 5 내지 7, 15, 16, 18, 19호증(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## 2.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

### 가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이 사건 병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되었거나 재해인정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병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,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.

### 나. 관련 법령

별지 기재와 같다.

### 다. 판단

#### 1) 이 사건 사고 이전 원고의 업무 내역과 치료 내역

① 원고는 19○○. ○○. ○○.생으로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건설일용직으로 일하거나, 어선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근무하였다.

②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도 2010. 11. 24.부터 2011. 5. 26.까지 요천추부 좌 골신경통, 요추부 아래허리 통증,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십여회 치료를 받았다.